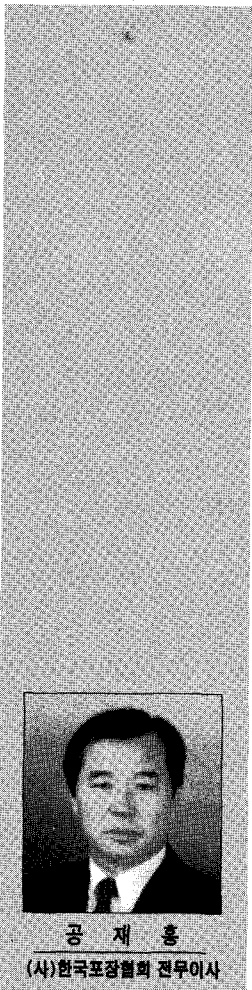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탁상행정의 표본



공재홍
(사)한국포장협회 전무이사

지난 10월 7일 환경부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얼핏 보기에는 현행안과 비슷해 보이나 깊이 분석하면, 실로 충격적인 독소 조항이 내포되어 있어서 심히 우려된다.

결론적으로 합성수지를 소재로 하는 일부 포장용기 생산 및 가공업체, 원단업체는 피해라던가 타격을 입는다는 차원을 넘어 2~4년 안에 생산을 전면 중단하라는 정부의 명령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현행 제2조(정의) 4항 「“감량화”라 함은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을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문항을 개정령(안)은 「“줄이기”라 함은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바꾸어 놓았다. 이는 기존의 연차별 감량화율을 정해놓고 추진하되, 회수하여 재활용 할 경우 감량화율에서 제외시키는 일종의 포장업체와 환경측면 모두를 만족시키는 법률안이었다.

그러나 동 개정령(안)은 재활용은 무시하고 아예 합성수지를 포장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 용기 생산 업계로선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는 폭탄적인 법률일 수밖에 없다.

지난 1995년도에 정부와 포장산업계 간에 충분한 협의와 진통 끝에 “회수, 재활용 처리 및 사용량 감량”으로 합의(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감량화 지침, 환경부 고시 제95~90호)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업계는 모든 방향을 동 법률안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 왔으며 그 일례로 계란 난좌의 경우 PET(폴리에스터)병을 회수하여 스크랩으로 분쇄, 100% 재활용에 성공, 정부로부터 GR(굿 리사이클)마크를 획득

합성수지 재질을 종이재질로 강제 대체토록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

하기로 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산업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이미 깊숙이 구축되어 있는 재활용 체제의 불용화로 재활용 산업계 도산은 물론, 합성수지 재질 포장업체의 대량 도산으로 파급될 것이며 이는 환경 논리만으로 정부가 관련 산업을 강제로 포기케 하고 아울러 대체 재질(제지) 분야에 특혜를 부여하는 양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포장재 줄이기(대체 재질 사용) 대상 품목 중 컵라면 용기(PS)의 경우 지난 1998년도 환경호르몬 사건으로 위생적이고도 경제적인 포장용기로 충분히 검증된 재질임에도 2007년 이후 대체 재질로 PE코팅 판지(50%)로 강제한 것은 각 포장재의 전과정 평가(LCA)를 거치지 않고 결성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다.

제지는 그 특성상 산림자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산림자원의 훼손이 따르고, 제지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화공약품 처리를 해야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유해 폐수 및 오수가 발생할 뿐 아니라, 더욱 PE코팅은 재활용이 전혀 불가능하며 가격이 비싸 결국은 전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또한 식품 위생상 아직은 검증이 안되어 자칫 대형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

를 야기시킬 수 있는 미완의 포장재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잡은 법률안 개정으로 우리 포장업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합성수지 포장재 줄이기 목표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선택이 불가피하여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양산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며, 그 보다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합성수지 재질을 종이 재질로 강제 대체토록 하는 법규정은 없고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일한 국가로 기록될 것이며 기네스북 기록 도전에도 충분할 것이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개정(안)의 “줄이기”의 정의를 「합성수지 재질 이외의 재질로 된 포장재를 사용하거나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서 현행(안)인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은 제외한다)」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마땅하며 대상품목의 연차별 목표를 재활용을 포함한 실적으로 하여 목표량을 재조정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고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관련 모든 업체와 단체들이 지구책을 위해 엄청난 반발과 함께 이의 부당성을 각계에 호소할 것이며 결국은 법정비화로 확산, 헌법재판까지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관련 업계의 각오이다. ☞